정보공개 결정 통지문 · 초안 예시

문서 상태: 담당자 검토 전 초안 / 발송 불가. 기관의 실제 결정통지 서식에 옮겨 검토해야 합니다.

수신: 한여울(가명) / 접수번호: JJ-가상-105 / 접수일: 2026.10.05(가상)

제목: 늘봄 시민쉼터 개선사업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통지(초안)

1. 청구 내용: 사업완료보고, 민원처리 요약 및 민원인 연락·서명 별첨의 전자파일 사본 공개 요청.

2. 검토 결과: 청구 전체 부분공개. A 사업완료보고는 공개, B 민원처리 요약은 부분공개, C 민원인 연락·서명 별첨은 비공개 검토입니다. 최종 결정은 담당자가 확정합니다.

3. 공개 범위: A01~A04(사업명·기간·집행금액·직무 수행 공무원 성명·직위) 및 B01~B03(민원접수일·건의주제·처리결과). 공무원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을 검토했습니다.

4. 비공개 범위와 사유: B04 민원인 성명, B05 개인 전화, B06 상세주소, C01 개인 전자우편, C02 자필서명은 다른 주민의 신원·거주·사적 연락수단과 민원 제기 사실을 드러내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로 검토했습니다. 제공 자료상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습니다.

5. 분리 공개: B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B04~B06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공합니다. C는 청구 대상 두 항목 모두가 위 비공개 검토 대상이며 따로 분리해 공개할 본문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6. 공개 일시: (확인 필요) / 공개 장소·제공 경로: (확인 필요). 청구인이 희망한 전자파일 제공 방법과 기관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납부 방법: (확인 필요).

불복 안내·확인할 사항

7. 불복 안내: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JJ시청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부서·주소·전자접수 경로: (확인 필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접수처·청구 및 제소기간·기산일 등 구체 절차는 현행 관계 법령과 기관 안내에 맞춰 보완: (확인 필요).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8. 통지일·결정권자·문의처: (확인 필요). 담당자는 법정 처리기한, 제3자 통지 등 선행 절차, 기관 비공개 세부기준을 점검한 뒤 문안을 확정합니다.

붙임 예정: A·B 공개본 1부. 내부 검토표 및 C 원문은 청구인 제공 파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